

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자상 규정

제정: 2011년 7월 18일

개정: 2015년 9월 15일

개정: 2021년 4월 17일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본 학회 평생회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문발전에 괄목할만한 공헌이 인정되는 연구자 또는 연구 논문에 대한 학술상 지급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자상'이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1항 본 다기관연구자상의 수혜 대상은 대한장연구학회 산하 연구회에서 주도한 다기관 연구로 진행된 장연구에 관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2항 수상자는 다기관연구자상으로 총 1명을 시상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 및 논문의 자격

제1항 다기관연구자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2항 다기관연구자상 대상 논문은 순수 국내 연구진에 의해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서 논문 저자, 소속, 사사 등에 '대한장연구학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며, SCI(E) 공인국제학술지에 심사시기를 기준으로 1년 이내 게재된 원저가 된다.

제3항 다기관연구자상 수상자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 국한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1항 다기관연구자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 심사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1. 신청서 (소정 양식)
2. 이력서
3. 연구업적 목록
4. SCI (E)공인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별책 PDF 파일(심사시기 기준 최근 1년 이내)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6조 학술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1항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당해년도 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2항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항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학술상 수여 및 상금 지급방법

제1항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다기관연구자상 수여대상자를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부 칙

제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항 본 규정은 본 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